

대법원 2019. 1. 17 선고 2018다272582 판결 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상고인

AAA씨 BBB파 종종

피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 외9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3. 선고 2018나2003074 판결

판 결 선 고

2019. 1. 17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,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